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 - 60
----------	--------

제출연월일 : 2003. 2. .
제 출 자 : 동두천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부칙(대통령령제16550)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기한을 당초 2003년 2월28일에서 6개월간 연장 협의된 2003년 8월 3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6개월간 연장하고 그 초과현원의 총수를 명시함

- 2003년 2월 28일 ⇒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초과현원) : 7명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1999.10.11 조례 제1007호) 제2조제3항중 “13명”을 각각 “7명”으로 하고 “2003년 2월 28일”을 2003년 8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되는 부칙(1999.10.11 조례 제1007호) 제2조제3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부 칙(1999.10.11 조례 제1007호)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②(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u>13명</u>(집행기관의 정원 <u>13명</u>)은 <u>2003년 2월 28일</u>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0.11 조례 제1007호)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②(현행과 같음) ③----- - -----<u>7명</u>(----- <u>7명</u>)- <u>2003년</u> <u>8월</u>-----<u>31일</u> ----- -----